

「적극행정 지원제도」 안내

01 사전컨설팅 제도

신청대상

- ① 법령, 행정규칙 등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발생한 민원업무
- 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나, 감사 부담으로 지연이 발생한 업무

처리절차

사전컨설팅을 희망하는 부서·기관은 신청 내용과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



(본부 감사담당관실) 검토의견 회신

※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

본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 적극행정 지원담당관실**」에 심사 요청



(감사원) 검토결과 회신

(30일 이내, 중요사안인 경우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60일 이내 회신)

면책 충족기준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
- ② 사전컨설팅 당시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을 것
- ③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02 적극행정면책 제도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

- ① 감사대상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③ 행위로 인하여 업무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④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처리절차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자체감사 종료 후
7일까지 감사관담당관실에 제출



면책여부 결정(심의위원회 등)



면책결과 통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0일 이내)

03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19.3.22.부터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쉽게 신고 및 구제가 가능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유형) ①적당편의 ②탁상행정
③업무해태 ④기타 관중심 행정

「청탁금지법」 Q & A

Q (순번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와 하급자들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매번 1/n로 각출하는 것이 불편하고 번거로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 A**
- ①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 ②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 ③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은 각자내기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Q (‘지체 없이’의 의미)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는지?

- A**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함
- 공직자 A의 경우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의 감경·면제 사유에는 해당됨

「공무원 행동강령」 Q & A

Q (갑질행위 금지 관련)

조직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에 대해 조직 내 왕따, 따돌림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는지?

- A**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7조(준용규정)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부터 66조(책임의 감면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따라서, 조직 내의 갑질을 신고한 공무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보장, 불이익 처분 일시 정지, 신분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갑질 및 비리신고센터
(익명)바로가기

※ 우리부 홈페이지 및 내부망(다우리)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익명)」 운영 중

Q (해외출장 부당지원 요구 금지 관련)

피감기관이 감독기관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 A**
- 공식적인 행사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 법령·기준에 따른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이 가능함.
- 즉, ① 직무관련 피감기관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공식행사로서
- ②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이며, ③ 지원근거가 법령·기준에 있는 경우에 허용됨
- 그러나, 피감기관의 지원에 의한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은 공식적 행사로 보기 곤란함

역사속 청렴 이야기

친척도 만나지 못하게 한 「분경금지법」



▲ 그림=정서용

조선 제2대 임금 정종은 1399년에 신하들에게 “모든 관리는 3, 4촌 내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자신보다 높은 벼슬에 있는 친척을 사사로이 만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분경금지법’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시행된 것은 정종의 뒤를 이은 태종때부터다.

분경금지법은 권세가 높은 친척의 집을 드나들며 더 좋은 관직으로 나아가기 위해 뇌물을 바치고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여기서 분경(奔競)은 분추경리(奔趨競利)의 줄임말로 ‘분주히 쫓아다니며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높은 벼슬에 있는 친척을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여 친척 간의 부정한 청탁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한 것이다.

단, 집안일로 꼭 만나야 하는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 사이거나, 군사기밀을 다루는 장수들은 예외로 두었다.

성종때는 8촌까지는 사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분경금지법을 완화했지만, 그럼에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곤장을 쳐서 먼 시골로 유배를 보낼 정도로 엄격한 형벌 조항을 두었다.

▲ 출처=조선일보(2016.10.25.)

청렴 명언

지배층의 영혼을 정화하라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이다. 반부패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

지도자는 사후에도 추앙받으리라는 망상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싱가포르 전. 총리
리관유(李光耀)>



리관유(李光耀), 1923.9월~2015.3월

195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 초대 총리에 올라 26년간 총리직을 지내다 1990년 퇴임했다. 그는 ‘싱가폴의 국부’로 통한다. 26년간의 총리 재임기간 동안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으로 도시 국가였던 싱가포르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발전시켰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집이 ‘국가 성지’로 지정되어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신의 사후에는 집을 허물라고 지시했다.

It takes 60 years for the organization to achieve its reputation, but it takes 60 seconds to lose it.

조직이 명성을 얻는데는 60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잃는데는 60초가 걸립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워렌 버핏>

사례로 보는 청탁금지법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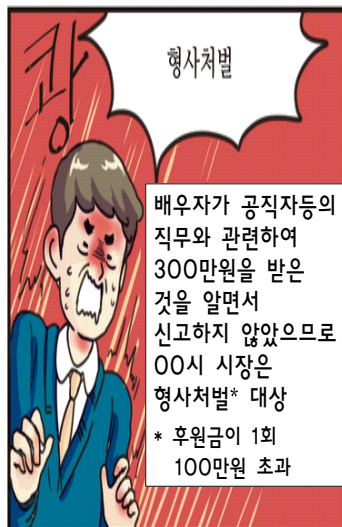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됨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 발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청렴 퀴즈 이벤트

OX 다음 설명하는 내용이 맞으면 ○, 틀리면 ×를 선택해 주세요.

Q. 고용노동부 직원의 갑질, 비리행위 등을 신고하려면 익명으로는 할 수 없다.

① ○ ② ×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소속 및 성명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2019.4.30.까지

♣ 응모방법: impipower@korea.kr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월별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에 대해 포상금 각 10만원 지급

2019. 3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서울남부고용센터	직업상담원	함 혁
고용관리과	직업상담원	김숙희
고용관리과	고객지원관	한귀옥
거제고용센터	주무관	진수연
대전고용센터	주무관	서은혜

2019. 4월 청렴마일리지 우수직원

고용관리과	주무관	김승균
고용관리과	주무관	이호병
춘천고용센터	보안요원	이봉기
서울관악고용센터	주무관	서미아